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1. 4.(화) 14:1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이기주 상임위원 (외부행사 일정으로 불참)

---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15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는 외부행사 일정으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은 총 1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4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9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 - 엠비엔미디어랩 (2014-51-170)

####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엠비엔미디어랩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한다. 두 번째, 엠비엔미디어랩 법인이 허가신청서류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 여부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하되,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허가조건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방송광고판매를 조건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방송광고 판매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PP와 그러하지 아니한 PP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광고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간 공동 수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의결주문은 최초 허가이므로 허가 유효기간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허가장 교부일부터 3년으로 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한 엠비엔미디어랩 법인의 허가 여부와 허가조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 드리면 올해 9월 16일 종편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신청공고를 하였고, 9월 26일 (주)엠비엔미디어랩 설립예정법인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7일~10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허가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으로 구성되었고, 심사위원의 명단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법률요건 심사입니다. (주)엠비엔미디어랩 허가 신청법인은 미디어랩법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는 부적격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량·비계량 평가 부분에서 (주)엠비엔미디어랩은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은 76.376점을 획득하여 적격 판정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건의 내용입니다.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완비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고, 다른 3개 종편PP 미디어랩 신청서에 비해 현실적인 약속을 한 만큼 준수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광고영업 등 불공정 사례 발생 시 엄격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엠비엔미디어랩(가칭) 법인을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및 기존 종편PP 미디어랩 허가 사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허가조건은 의결주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허가 대상법인에게 선정결과 공문을 11월 4일까지 통보하고 허가장 교부는 12월 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종편PP 엠비엔미디어랩 신규 허가심사위원회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허가조건을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허가조건은 올해 초에 1차적으로 3사 미디어랩에도 나갔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조건과 동일한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동일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3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아까 보고드렸드시피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도 지난번 3개사 종편미디어랩을 허가할 때와 비슷한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해서 기존의 3개 미디어랩과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요한 조건, 방송광고판매의 공익성이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방안과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랩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방지 이행계획을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 및 검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허가를 받은 3개 미디어랩 같은 경우 벌써 시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관련된 계획을 이미 제출받으신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제출 받았습시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3월 말에 실제 제출 받아서 4개사를 한꺼번에 검증하겠다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지금 엠비엔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사실상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텐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엠비엔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이행실적을 제출받아서 점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여쭙 본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3개사에 대해서는 이행실적을 3월 말까지 제출받아서 이행계획과 적합여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언제쯤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3개사에 대해서 올해 안에 보고할 예정인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3개사가 올해 이행계획을 제출했고, 내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면 이행계획과 이행실적을 저희들이 점검해야 하니까 실제로 보고 드리는 시점은 3월 말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종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재승인하면서 방송의 공정책임 및 공정성 구현 부분에 대해 반기 6개월마다 운영실적을 한 번씩 내서 그것을 검증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어랩의 경우 올 1년은 거의 검증 없이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연단위의 실적 제출을 받아서 검증하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디어랩이 지금 저희들에게 약속한 그리고 그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물론 지금 허가조건상으로는 매년 3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인데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종편사처럼 반기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건으로는 내년 3월 말까지 실적을 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시 말씀 드리면 연단위로 실적을 제출받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평가한다면 자칫 종편미디어랩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감안하셔서 조금 더..., 왜냐하면 특히 이것이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편미디어랩이 조기에 자리를 잡고 방송광고판매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독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허가조건사항으로는 매년 한 번 이행실적을 제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종편미디어랩사의 협조를 얻어서, 전에 중간단계로 한 번 체크하는 의미로서 그런 실적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허가·재허가를 해 줄 때 사업계획서와 또 허가조건을 붙여서 합니다. 허가조건은 심사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처에서 만든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은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정책 규제기구가 규제하거나 감독한다고 해서 방송사나 미디어랩의 자율성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허\*/5가·재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할 때부터 비전과 중점과제에 담은 내용이 중간점검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재허가를 내 줄 때 차후에 사업계획서 이행여부와 허가조건을 제대로 점검하는 후속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 직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엠비엔미디어랩뿐만 아니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와 허가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리고 후속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 내용 중에 ‘다른 3개 종편PP 미디어랩 신청서에 비해 현실적인 약속을 한 만큼 준수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라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심사위원들 중 일부가 기존의 종편 3사 허가계획서도 심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의 종편 3사의 사업계획서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산정이나 영업방식 부분이 현실적인, 실제 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실적인 약속을 했으면 좋게 평가를 하면 되는데, 현실적인 약속을 한 만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높은 수치의 약속을 했으니까 잘 지도·감독하러든지 그러면 의미가 될 텐데 현실적인 약속을 했으면 오히려 준수될 여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런 취지인데, 현실적인 약속을 했으니까 사무처에서 꼭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잘 되도록 해 달라,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 내용 마지막을 보면 '매체사를 활용한 광고 영업 등 불공정 사례 발생 시 엄격하게 조치할 필요', 지금 이 건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민원이나 의견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매체사를 활용한 영업 자체는 랩법상에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실에 방송광고와 관련되는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 민원이 바로 직접 접수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방송시장조사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금 말씀하신 불법광고영업신고센터는 지난번 미디어랩 승인할 때 논의됐던 것이지요?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아직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들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업무처리하면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연내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도 MBC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달 MBC가 단행한 교양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그리고 공영방송 MBC의 상징이었던 우수한 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한 교양PD들을 비제작부서 혹은 교육을 보내는 인사발령을 놓고 MBC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정도로 “특정PD와 기자 찍어내기, 밀실보복 조직개편과 인사 그리고 MBC 전체의 몰락을 앞당기는 폭거” 등 참담함과 분노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MBC의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조치를 보면 방송의 공영성 및 공공성 수행이라는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 혹은 가치 구현에 어떻게 부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인사권이 사규 등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행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당성 획득의 기초는 그 권한의 행사가 조직의 존립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번 MBC 사장의 조직개편과 인사권 행사는 정상적인 경영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롭지 못한 권한 행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MBC 관련 문제제기를 통해서 위원회 차원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위의 기본 책무 수행은 물론 제3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과제로 밝힌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공정성 구현을 위해서라도 이번 MBC 문제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MBC의 경영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 개인 입장을 말씀드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도내용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서로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를 보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MBC는 아직 방문진에 정식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는 방문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MB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방문진은 MBC 경영진의 전횡을 방치함으로써 MBC의 공적책무 실현,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이라는 기본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문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위원회가 방문진으로 하여금 MBC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의견을 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홍 상임위원

- 참고로 말씀 드리면 MBC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가진 것이 방문진 이사에 대한 추천권도 아니고 임명권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직무로서 감독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양제작국 폐지와 PD들의 전보 조치, 경영권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방송평가에서 운영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편성과 운영, 3대 분야

인데, 2013년도 방송평가는, 이미 지상파는 지나갔습니다만, 다음번 방송평가 작업에서 운영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지원단이 실무작업은 합시다만 사전에 논의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MBC의 운영평가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채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성에서도 교양 분야의 편성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폐지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러면 편성 부분의 평가에서도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제공을 해서 내년에 있을 평가지원단이 실무작업할 때 반영을 할 것이고, 방송평가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고려해서 평가작업을 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0분 폐회 】